

제162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23. 8. 8.

□ 안건명 :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

위 안건에 대한 제162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,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붙임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「조건부채택」 의결함.

【주요 심의내용】

- (1) 조사방법에 아래 사항 추가
 - 계약상대자는 실측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장물명, 저촉예상, 위험성여부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하고, 승인을 받아 줄파기, 횡단굴착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실정산 반영한다.

- 5. 구조물 설계에 아래 사항 추가 필요
 - 5)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.
 - 6) 특허 및 신기술 공법 적용시 시공성, 실적 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한다.

- 제4장 설계 업무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기 바람
 - 안전사고 예방, 폐기물 처리, 계측계획, 토공설계, 기타 부대시설 설계

붙임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 끝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62차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| 분 야 | 검 토 의 견 | 비 고 |
|------|--|-----|
| 토목구조 | <p>1. “제 1 장 9. 관계기관 협의 및 인·허가”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바랍니다. 원문) 2)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충분히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. 변경예) 2)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2. “제 1 장 10. 심의 및 자문 등”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바랍니다. 원문) ④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예) ④ 설계내용 주요사항 변경 또는 설계방향 결정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3. “제 1 장 10. 심의 및 자문 등”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바랍니다. 원문) 5)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2에 따른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(공사기간 적정성 심의)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 6)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관련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의견을 받아야 한다. 변경예) 5)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(1)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2에 따른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(공사기간 경직성 적정성 심의)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| |

(2)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7조 및 관련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의견을 받아야 한다.

4. 기관명 중 ‘한국시설안전공단’은 ‘국토안전관리원’으로 수정바랍니다.

5. “제 4 장 7. 기전설비설계”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바랍니다.

원문)

1) CCTV 설치시 감시카메라의 감시범위·지장물(수목 등)을 충분히 고려하고, 가급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 검토하여야 한다.(녹화기능 필수)

변경예)

1) CCTV 설치 시 감시카메라의 감시범위 및 지장물등을 충분히 고려하여,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. (녹화기능 필수)

6. “제 4 장 12. 가시설설계”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바랍니다.

원문)

4) 흠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, 하천수위, 지반조건, 지하수 상태,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흠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.

변경예)

4) 흠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, 하천수위, 지반조건, 지하수 상태 및 주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.

7. “제 5 장 2. 성과품의 구성 4) 설계도면”에서 오타를 수정바랍니다.

주석(Note)난 → 주석(Note)란

8. “제 5 장 2. 성과품의 구성 4) 설계도면 ⑤ 구조물도 작성 너.”는 지하차도에 관한 내용이므로 삭제 또는 수정바랍니다.

9. “제 5 장 2. 성과품의 구성 4) 설계도면 ⑥ 전기시설도면. ⑦ 기계시설 도면”는 지하차도 설치시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수변 전망데크 및 보행데크에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바랍니다.

| | | |
|-------------|--|--|
| | <p>10. “제 5 장 2. 성과품의 구성 4) 설계도면 ⑧ 가시설도 및 상세도”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바랍니다. 원문) 가. 지하차도 및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변경예) 가. 수변전망데크 및 보행데크등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</p> <p>11.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내거나,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,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는 가운데점 ‘.’을 적용하여야 하나, 마침표나 쉼표를 적용한 곳이 있으므로 수정바랍니다. 원문) 인 . 허가, 보완.변경, 수정.반영, 전.후의, 조사.분석, 지하, 지상 변경예) 인·허가, 보완·변경, 수정·반영, 전·후의, 조사·분석, 지하·지상</p> | |
| <p>종합의견</p> | <p>조건부채택</p> | |

2023년 8월 2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62차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| 분 야 | 검 토 의 견 | 비 고 |
|-----|--|------|
| | 1. 목차와 본문 제목일치 필요 | |
| | (1) 제1장 일반사항 10. 심의 및 자문 등 11. 신기술.특허공법 등 도입 22.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| 목 차 |
| | (2) 제4장 설계업무 18. 조감도(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) | 목 차 |
| | 2. 관련내용 문구 간결화 및 명확화 필요 | |
| | (1) 2.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...(중략)...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. | p.1 |
| | (2) 3. 과업의 개요/4) 과업기간 (1) 본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60일간으로 한다.(공휴일 포함) | p.2 |
| | (3) 9. 관계기관 협의 및 인.허가 2) 사업시행에 따라 ...(중략)...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. | p.6 |
| | (4) 10. 심의 및 자문 등 5)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, 6)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→ 5), 6) 항목 중첩 : 관련법규에 따른 심의 및 자문으로 구분필요 | p.7 |
| | (5) 7) 설계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...(중략)...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. | p.7 |
| | (6) 23.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8)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④ 시공과정의 ...(중략)...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. | p.16 |
| | (7) 제2장 조사업무/2. 조사내용/3) 지장물 조사/(2)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...(중략)... (공간정보담당관) (이하생략) | p.19 |
| | (8) 제4장 설계업무/10. 시설물설계/1) 기본방향 (7) 시설물은 본 과업의 특성에 맞게 (이하생략) | p.33 |
| | (9) 제5장 성과품 작성/2.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/7) 설계예산서 작성 (10) 월가계산 월가계산은 ...(중략)... (행정안전부)에 따라 작성한다. | p.47 |

| 분 야 | 검 토 의 건 | 비 고 |
|-----|---|--|
| | <p>3. 관련법규 인용조항 명확화 필요</p> <p>(1) 9) 공법선정위원회(신기술·특허공법) 신기술...(중략)...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2절(이하생략)</p> <p>(2) 11. 신기술.특허공법 등 도입 4) 신기술...(중략)...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2절(이하생략)</p> <p>(3) 23.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) 준수사항 (4) 본 과업내용서...(중략)... (제9장 계약 일반조건)에 따른다.</p> | p.8 p.8 p.14 |
| | <p>4.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 명확화 필요</p> <p>(1) 제2장 조사업무/ 1. 조사항목 계약상대자는...(중략)... 국내.국외의 우수 교량(테크) 및 음악분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, 분석하여야 한다. → 과업범위 해당사항에 대해 명확화 필요</p> <p>(2) 제4장 설계업무/3. 생태녹지축 설계 → 과업범위 해당시 제1장 일반사항/3. 과업의 개요 부분에 생태 녹지축 과업내용 명기필요</p> <p>(3) 제4장 설계업무/4. 토목설계/12) 지장물 이설 설계 (1) 수변전망테크 및 보행테크 건설에 (이하생략)</p> <p>(4) 제4장 설계업무/4. 승강기설계 1)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, 신설테크 구조물형식, 테크 이용 보행자, (이하생략)</p> <p>(5) 제4장 설계업무/8. 경관디자인 설계/2) 디자인 설계 (2) 단순한...(중략)... 보행테크 형태로 조성하여야 한다.</p> <p>(6) 제4장 설계업무/10. 시설물설계/5) 충격완화시설 (1) 도로시설물, 지하차도 사중점부의 돌출 구조물에 안내 및 충격완화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→ 과업범위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삭제 필요</p> <p>(7) 제5장 성과품 작성/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/ 3)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/(7)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⑤ 구조계산서 각 쪽마다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의 직명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. → 전산출력물 특성상 결과요약부 한정 또는 삭제 필요</p> | p.17 p.27 p.30 p.31 p.32 p.34 p.41 |

| 분 야 | 검 토 의 건 | 비 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|------|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---------|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<p>(8) 제5장 성과품 작성/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/ 4) 설계도면 /(2) 도면의 작성</p> <p>㉗ 기계시설 도면 지하차도의 장비 일람표, 소화기함 설치 평면 및 상세도, 배수배관 평면 및 단면도, 펌프 및 파이프 슬러브 상세도 등을 작성한다 → 과업범위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삭제 필요</p> <p>(9) 제5장 성과품 작성/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/ 4) 설계도면 /(2) 도면의 작성/㉘ 가시설도 및 상세도가. 지하차도 및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→ 과업범위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삭제 필요</p> <p>(10) 제6장 성과품 납품/2.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당 초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9 880 1272 1176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납 품 목 록</th> <th>수 량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설계도면</td> <td>설계원도</td> <td>10부</td> <td>CD-ROM 5 -별도</td> </tr> <tr> <td>축소판 원도</td> <td>10부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축소도면</td> <td>10부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CD-ROM(CAD FILE) 또는 USB</td> <td>1식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변 경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9 1227 1272 1440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납 품 목 록</th> <th>수 량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설계도면</td> <td>원본도면, 축소도면</td> <td>10부</td> <td>CD-ROM 5 -별도</td> </tr> <tr> <td>CD-ROM(CAD FILE) 또는 USB</td> <td>1식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→ 설계도면은 CAD FILE로 작성되므로 별도의 설계원도 및 축소판 원도가 없는 바, 원본도면, 축소도면으로 한정 필요</p> | 납 품 목 록 | | 수 량 | 비 고 | 설계도면 | 설계원도 | 10부 | CD-ROM 5 -별도 | 축소판 원도 | 10부 | | 축소도면 | 10부 | | CD-ROM(CAD FILE) 또는 USB | 1식 | | 납 품 목 록 | | 수 량 | 비 고 | 설계도면 | 원본도면, 축소도면 | 10부 | CD-ROM 5 -별도 | CD-ROM(CAD FILE) 또는 USB | 1식 | | <p>p.44</p> <p>p.44</p> <p>p.50</p> |
| 납 품 목 록 | | 수 량 | 비 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설계도면 | 설계원도 | 10부 | CD-ROM 5 -별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축소판 원도 | 10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축소도면 | 10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CD-ROM(CAD FILE) 또는 USB | 1식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납 품 목 록 | | 수 량 | 비 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설계도면 | 원본도면, 축소도면 | 10부 | CD-ROM 5 -별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CD-ROM(CAD FILE) 또는 USB | 1식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종합의견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건부채택</p> <p>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2023년 8월 .2의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62차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| 분 야 | 검 토 의 견 | 비 고 |
|------|---|-----|
| | <p>1. 과업내용서 검토결과 일반사항, 조사업무, 계획업무, 설계업무, 성과품 작성 및 성과품 납품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음.</p> <p>2. 과업내용 및 오타수정</p> <p>1) 20쪽 ⑤ 안전관리</p> <p>~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~ → ~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~</p> <p>계약상대자 조사실시 중 ~ 공중에 불편이~ → 계약상대자 조사실시 중 ~ 공중생활에 불편이~</p> <p>계약상대자 조사 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, 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~ → 계약상대자 조사 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, 지하시설물 및 가설구조물에~</p> <p>2) 21쪽 ③ 시추조사</p> <p>기반암이 깊을 경우 하부 5.0m이상 또는 기초폭 단변의 2배 이상을 시행한다 → 기반암이 깊을 경우 구조물기초 하부 5.0m이상 또는 기초폭 단변의 2배 이상을 시추하여야한다</p> | |
| 종합의견 | 조건부채택 | |

2023년 8월 2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62차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| 분 야 | 검 토 의 견 | 비 고 |
|------|---|-----|
| 일반사항 | 1. 1쪽 (4) 기본설계의 ③항 → 비교.검토하여 최적의 형식과 공법을 제시(추가) ④항 → 비교.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(추가) 2. 3쪽 (1) 착수신고서의 “내역서” 제외필요 3. 5쪽 1)계약상대자의 책임중 (3)변경에 대한 검토서 →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포함한 검토서 4. 7쪽의 5),6)항의 공사기간 적정심의 항목을 한개의 항으로 조정 요함 5. 14쪽 1)준수사항의 (2)~있다, 다만 타절하기 까지의 수행한 용역비용은 상호 협의하에 정산조치 한다. | |
| 조사업무 | 6. 19쪽 (1) 조사방법 추가 ③ 계약상대자는 실측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장물명, 저축예상,위험성여부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줄파기,횡단굴착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실정산 반영한다. | |
| 설계업무 | 7. 29쪽, 6)이식설계의 (7)항 ~ 가식장 확보 “및 가식후 적절한 관리계획” 추가 | |
| 기 타 | 8. 45쪽 유지관리 지침중 ⑨항 추가 : 특히 초화류 교.관목 식재후 하자기간내 원활한 활착을 위한 잡초제거 등 관리계획 포함 | |
| 종합의견 | 조건부 채택 | |

2023년 8월 2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62차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| 분 야 | 검 토 의 견 | 비 고 |
|-----|---|-----|
| | <p>1. 3)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에 (8)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투입 계획 추가 필요</p> <p>2. 10. 심의 및 자문 디자이너 참여 관련된 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사항을 수정하기 바람 -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→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</p> <p>3. 10. 심의 및 자문에 기술심사담당관-9029(2023.5.16.)호에 따라 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하여 디자인 품질향상 방향과 관련 내용이 설계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</p> <p>4. 22.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현행화 필요 (19)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→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※ 과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기준 정리(현행화) 필요</p> <p>5. 23.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의 1) 준수사항 및 2)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서 아래 내용 보완 필요</p> <p>1) 준수사항 (1) 관계법령 및 제규정 →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(4)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→ 제9장 계약 일반조건 (5)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. (세부 내용 추가 필요)</p> <p>2)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(18) 주민 등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발생 최소화 (19)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계를 완성도 있게 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 사항 사전 예방</p> | |

| | | |
|-------------|--|--|
| | <p>6. 5. 구조물설계에 아래 사항 추가 필요</p> <p>5)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.</p> <p>6) 특허 및 신기술 공법 적용시 시공성, 실적 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한다.</p> <p>7. 5)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관련 사항이 중복되므로 수정 필요</p> <p>8. 제4장 설계업무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기 바람</p> <p>20. 안전사고 예방 추가</p> <p>21. 폐기물 처리 추가</p> <p>22. 계측계획 추가</p> <p>23. 토공설계</p> <p>24. 기타 부대시설 설계</p> <p>9. 제5장 성과품 작성에서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사항 수정 필요</p> <p>- 지하차도 및 진입로 설치 → 전망 및 보행데크 설치</p> | |
| <p>종합의견</p> | <p>조건부채택</p> | |

2023년 8월 1일

심의위원 :